

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9. 2.

임실군의회 의장

1. 개정이유

가. 보훈관련단체 통합에 따른 명칭보완과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위로금 청구 기한(현행 3개월)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월남참전전우사회복지전우회 임실군지회 삭제(안 제2조)
나. 사망위로금 청구기한 확대(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1)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분석 : 원안동의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15. 6. 26. ~ '15. 7. 15)결과 : 특이 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관련법령 발췌문 : 붙임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4의 대한민국 월남참전전우사회복지전우회 임실군지회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 3. (생략)</p> <p>4. 참전단체"란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임실군지회, 대한민국 6.25참전학도의용군회 임실군지회, 대한민국 월남참전전우사회복지전우회 임실군지회,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임실군지회, 대한민국월남참전전우회 임실군지회를 말한다.</p> <p>제4조(지급신청) ① (생략)</p> <p>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지급대상자 사망후 3개월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삭제 ----- ----- ----- ----- .</p> <p>제4조(지급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6개월 ----- ----- ----- .</p>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 소용비용계획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3. 미첨부 사유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 1호에 따라 조례개정
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가 해당없음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주민복지과장 서 성 석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5A전북임실053		
정책명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담당자명	최낙현	전화번호 063-640-202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5년 08월 1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주민복지과)	<p style="text-align: center;">○ 대한민국 월남참전전우사회전우회 삭제(제2조)와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청구기한을 6개월로 개정(제4조)</p>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p>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함</p> <p>○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해당 없음</p>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08월 12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복지과장</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박경숙/063-640-2123)</p> <p>주민복지과장 귀하</p>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